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 >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214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	3
2.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9
[참고자료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황	13
[참고자료 2] 가정 밖 청소년(성평등가족부) 및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 지원 제도 비교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 내 폭력·학대·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 의료·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 확대 등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에 의료·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 없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32조의3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생략)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u>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u>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u>상담(심리상담을 포함한다), 보호, 자립지원, 의료·심리치료 지원, 학업 지원, 사후관리</u> -----.
<신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내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기간 및 퇴소 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제1항부터 제5항
까지-----

-----.

<삭 제>

<u>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u> <u>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u> <u>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u> <u>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u> <u>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먼저, 현행법 제16조제2항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의료·심리치료 지원, 학업 지원을 추가하여 명시하려는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상담”을 “상담(심리상담을 포함한다)”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 등 다른 많은 조문에서 “상담”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다른 조문들에서 “상담”은 심리상담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 제32조의3²⁾은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의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³⁾을 퇴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를 받은 청소년에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매월 50만원(최대 5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은 일부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제주)에서 시설을 1년 또는 2년 이상 이용(지자체 자체기준 적용)하고 18세 이후 퇴소한 자에게 1인당 500만원~1,500만원(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지급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자립지원의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도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조문 비교 >

현행법 제32조의3	개정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32조의3 삭제)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내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제5항에서 규정함 4.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4) [참고자료 2] 참조

현행법 제32조의3	개정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32조의3 삭제)
	후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퇴소 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호·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선정할 것인지와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행 제도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보호·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립수당 등 재정지원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보호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음.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수용의견)하나, 자립지원 대상을 청소년복지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하는 방안은 기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⁵⁾와 정합성, 재정 여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가정 밖 청소년 대상 보호·자립지원서비스 제공

2.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홍보영상 제작·배포 및 방송 송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아동복지법」 7), 「노인복지법」 8), 「장애인복지법」 9) 등이 있음.

-
-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7) 「아동복지법」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8)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다만, 개정안은 홍보영상의 제작 대상을 위기청소년¹⁰⁾ 중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가정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 청소년도 보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보영상의 제작 대상을 위기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정책 대상이 가정 밖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고 위기청소년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홍보 대상 범위를 ‘가정 밖 청소년’에서 ‘위기청소년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수용하는 입장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방송협회는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4항¹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0)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21278호, 2025.12.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의2. “고립·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11)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 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를 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가 특정 주제에 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송출을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의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방송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무료로 송출되는 것이어서 방송사의 부담 가중 및 방송법 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

【참고자료 1】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황

□ 청소년쉼터

- (사업목적)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통해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1조)
- (추진경과) 청소년쉼터 최초 운영 지원(서울YMCA, '92.10.28)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근거 마련('12.2.1)
- (주요내용)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자립준비 및 주거 등 지원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최장 24개월)	3년 이내(최장 4년)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 (운영현황)

(단위 : 개소, '25.12월 기준)

구분	청소년쉼터(138)						
	계	일시(33)		단기(67)		중장기(38)	
		이동	고정	남	여	남	여
계	138	14	19	29	38	17	21
서울	17	4	4	2	3	1	3
부산	5	1	1	1	1	-	1
대구	6	1	1	1	1	1	1
인천	8	1	2	2	2	-	1
광주	5	1	-	1	1	1	1
대전	6	1	1	1	1	1	1
울산	5	-	1	1	1	1	1
세종	-	-	-	-	-	-	-
경기	32	2	4	7	11	4	4
강원	8	1	2	1	2	1	1
충북	7	1	-	2	2	1	1
충남	10	-	-	3	5	1	1
전북	6	-	1	2	1	1	1
전남	4	-	-	2	1	1	-
경북	7	-	-	1	3	1	2
경남	6	-	1	1	2	1	1
제주	6	1	1	1	1	1	1

□ 청소년자립지원관

- (목적)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중심의 자립 지원
- (대상)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 (운영방식) 주거지원 형태에 따라 구분
 - 이용형 : [주거연계] + 자립지원 프로그램
 - * 이용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정책 연계를 통해 주거 지원
 - 혼합형 : [주거연계 + 생활관운영] + 자립지원 프로그램
 - * 주거지원정책 연계 및 생활관 직접 운영
- (예산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13개소×338백만원×보조율50% = 2,198백만원
- (운영현황) 13개소 * 이용형 7개소, 혼합형 6개소

(단위 : 개소, '25.12월 기준)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
시설 수	13	2	1	1	2	1	3	1	1	1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을 통한 비행·탈선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6개월)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추진경과)
 -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운영('10년 ~ , 법원)
 - * 법원에서 센터장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1호 처분 소년 위탁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근거 마련('16.5.29., '16.11.30. 시행)
 - * 예산지원 : '19년부터 현재까지
- (운영현황) 18개소

(단위 : 개소, '25.12월 기준)

시·도	합계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성별	남자	10	1	1	1	1	1	-	3	1
	여자	8	2	-	1	-	2	1	1	1
합 계		18	3	1	2	1	3	1	4	2

【참고자료 2】 가정 밖 청소년(성평등가족부) 및 자립준비청년(보건복지부) 지원제도 비교

□ 자립(지원)수당

구 분	자립지원수당 (가정 밖 청소년, 성평등가족부)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복지부)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아동복지법」 제38조
지원시작	2021년	2019년
지원단가	월 50만원 * ('21) 30만원 → ('23) 40만원 → ('25) 50만원	월 50만원 * ('19) 30만원 → ('22.8월) 35만원 → ('23) 40만원 → ('24) 50만원
지원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포함)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퇴소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 시 18세 이후 지급
대상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 자립정착금

구 분	자립정착금 (가정 밖 청소년, 성평등가족부)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 복지부)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아동복지법」 제38조
지원시작	국비 미지원	1993년 지원, 2005년 지방이양
지원내용	일부 시·도(부산, 울산, 경기, 제주)에서 1인당 500~1,500만원 지급	전국에서 1인당 1,000~2,000만원 지급 * 복지부, 1인당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재 원	지자체 자체예산	지방비 100%(지방이양사업)
지원대상	시설을 1년 또는 2년 이상 이용*하고, 18세 이후 퇴소한 자 * 지자체 자체기준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15세이후 조기보호종료 시 18세이후 지급) * 시설이용 요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방식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	분할지급 권고